하동군의회 공고 제2026- 14호

하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3. 5.

하동군의회의장 강 대 선

1. 조례명: 하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2. 제안이유

○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우선주차구역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마.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바.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사. 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의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26년 3월 12일(목)**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
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1) 팩스: 055-880-2939

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http://www.hdcl.go.kr) 열린마당(의회에 바란다)

3) e-mail: star0208@korea.kr

붙임 1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**조 례 명: 하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**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　　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　　견	비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하동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(이하 “우선주차구역”이라 한다)”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하동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.

1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
3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
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

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

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본인

7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

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

제5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하동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

2. 하동군이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

② 군수는 「주차장법」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6조(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)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. 다만,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2.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

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.

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.

제7조(우선주차구역의 이용)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(위반차량 조치)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

(제6조제2항 관련)

1. 바닥면 도안

< 바닥면 도안 >

규격: (가로) 2,500mm × (세로) 5,000mm

색상: (Blue) Pantone_294C, (Red) Pantone_1795C

서체: Noto Sans KR Black

2. 안내표지판 도안

< 안내표지판 >

규격: (가로) 700mm × (세로) 600mm

색상: (Blue) Pantone_294C, (Red) Pantone_1795C

서체: Noto Sans KR Black